

일본·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전 은 정*, 김 학 범**, 염 흥 열***

요 약

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분석하였다.

I. 서 론

해외 각국에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주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197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자국 내에서 행하여지는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규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일본에서도 기업의 고객명부 등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침해의 문제 또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의를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이 계속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사회적인 불안감과 함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 사회의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료를 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¹⁾.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기본법과 일반법의 이층구조의 특이한 법률 구조는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보호 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사법적인 제재도 점점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므로써 향후 제정될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일본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다. 2장에서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제도를 3장에서는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4장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 및 결론을 맺는다.

II.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2.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경위

일본에서는 1970년대의 자치단체사무의 컴퓨터 도입

*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junej@sch.ac.kr)

** (주)지엔에스인증원/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khh0305@gns-iso.co.kr)

***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hyyoum@sch.ac.kr)

과 관련하여 소위 전산처리조례를 효시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의식한 조례 등이 제정되기 시작함에 따라 조례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의식한 개인정보보호조례는 중앙정부보다는 국립시, 춘일시, 천기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제정하였다^[2].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OECD에서 1980년 9월 23일에 채택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이다. OECD 이사회 권고에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행정관리청에 프라이버시보호연구회를 설치하고 이에 ‘개인데이터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회’가 설치되고, 의견으로써 옴니버스식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을 별개로 한 세그먼트 방식을 취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할부판매법’과 ‘대금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취업소개사업의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는 ‘취업안정법’과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이 부분적인 영역에서의 개별입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이어 내각에서 민간부문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검토를 1999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하에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전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각의결정되었고, 국회에 제출한 후,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를 통해 2003년 5월 23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는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7년이 경과하였으나, 모호한 법 규정 및 하위 지침 등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법률에 대한 과민반응과 이해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표 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경위

연도	추진내용
1980.9	OECD 이사회권고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1988.12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성립
1999.7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하에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
2000.1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하에 개인정보보호법제화 전문위원회 설치
2000.6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중간정리) 작성
2000.11	개인정보보호법제화전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 공표
2001.3	제151회 국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출
2002.12	제155회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폐안
2003.3	제156회 국회에 기본원칙부분이 삭제된 동법안 재제출
2003.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성립
2005.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6	최종 개정

[출처] 호리베 마사오(명예교수)2011.04, <http://www.caa.go.jp/seikatsu/kojin/>^[3]

등 법 시행 이후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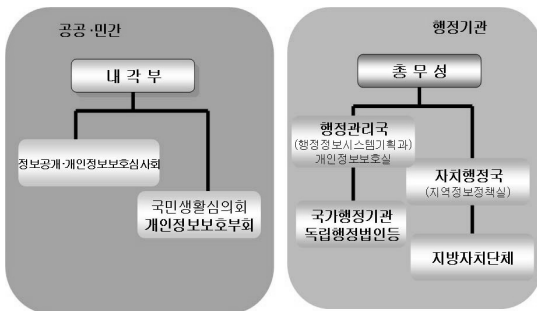
2.2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추진체계

일본은 내각부와 총무성 등 2개 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내각부는 공공·민간부문을 총괄하여 일본의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국민생활심의회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부회 및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총무성은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등의 개인정보보호의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관리국의 행정정보시스템기획과가, 지방의 경우 자치행정국 지역정보정책실이 관장을 하고 있다. 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첫째, 내각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부회는 부회장, 부회장대리, 위원, 임시위원의 체계이며, 주로 대학교수, 방송 및 언론 관계자, 변호사, 경제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내용으로는 공공단체, 사업자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및 기본방침 제정, 개인정보보호 운영상황 및 실태

조사 수행, 인터뷰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수행한다. 한편,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이하 '심사회'라 한다)는 정보공개결정, 정정결정 또는 이용정지결정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심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심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5명은 상근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의 형태이다. 심사회 체계는 회장, 회장대리, 위원이며, 구성원은 재판소 판사, 검찰청 검사,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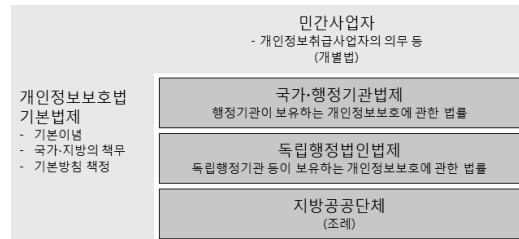
둘째, 총무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행정관리국의 행정정보시스템기획과 개인정보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및 관리하며, 가이드라인 및 규정의 제시, 매년 법률의 시행상황 조사 및 결과 공표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자치행정국에서 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대책 추진, 가이드라인 정비, 정보보안감사 등의 제도정비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2003년부터 상기 5개 법률 등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및 검토 등의 요청, 시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핸드북 제작·배포, 2011년에는 과잉반응에의 대응요청, 누설방지 등의 요청, 체제정비 등의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추진체계도
(출처: <http://www.soumu.go.jp/> 총무성)⁶⁾

2.3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및 내용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출처: 이자성 논문)

일본의 경우처럼 기본법과 일반법의 이중구조의 법률은 매우 드문 형태이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기본법적 방식에 관해서는 옴니버스 방식을, 일반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세그먼트 방식을 취하여 양자의 성격이 포함된 절충적인 형태라 하겠다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6장 제5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이 있으며, 제2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의 책무,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법제상의 조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이 있다. 제3장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방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국가시책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구역내 사업자 등에의 지원이 있으며, 국가시책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지원, 고충처리를 위한 조치, 고충처리 알선이 있다. 제4장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로서 개인정보사업취급자의 의무와 민간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이 있으며, 개인정보사업취급자의 각종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4장의 제2절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추진을 규정하여 민간사업자의 인정, 폐지 제출, 대상사업자, 고충처리, 인정기준, 명칭사용 제한, 보고징수, 명령, 인정취소, 개인정보보호지침, 목적 외 이용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제5장의 잡칙과 제6장의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제1장 총칙에서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까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이고, 제4장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에서 제6장 벌칙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부분을 규제한 내용인 일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⁹⁾

구분	주요 내용	
정의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개인 데이터	검색가능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구성하는 정보이며, 컴퓨터정보뿐만 아니라 매뉴얼 정보도 포함됨.
	보유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시, 정정 등의 권한을 가진 개인 데이터로 되어 있음.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정부·공공단체 등과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5천건 이상을 초과하는자
사업자의 의무	- 목적 외의 이용에는 본인 동의 필요 (제16조)	
	- 부정취득 금지 (제17조)	
	- 안전관리조치 마련 (제20조)	
	- 제3자 제공 시 본인 동의 필요 (제23조), 다만 법령에 기초한 경우는 예외	
	- 본인이 동의한 방법으로 공시 (제25조)	

2.4 개인정보보호조례의 운영 현황

일본 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현황을 집계한 이래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이 대부분이 제정되고 있다. 도도부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조례 및 정보보호방침은 전 47개 단체가 전부 제정완료하였고, 시정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경우 전 1,843개 단체가 100% 제정하였고, 정보보호방침의 경우, 1,843개의 단체 중 1,773개 단체가 제정하고 있다²⁾.

우선 정보보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2003년 8월 「전자자치체 추진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추진지침서에서는 ‘모든 공공단체는 정보보안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마련,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조례의 제정’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4월 2일 내각회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4월 2일 내각회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⁹⁾.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조례인 가와가나현, 미야기현, 오사카부의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2.4.1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개인정보보호조례

가나가와현의 개인정보보호조례는 1990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전면개정 등을 통해 총 8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례는 총 5장 6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총칙, 제2장 실시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제3장에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잡칙과 제5장의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공개, 정정 및 이용정지 등에 대한 개인권리의 명시 및 적절한 취급으로 개인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방지를 제시하고 있다¹²⁾.

실시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사무의 사전등록,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제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불복신청 등을 명시하도록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에 있어서 첫째, 업무의 등록, 조사·권고·공표, 권고 및 공표 등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업무의 등록은 개인정보의 취급 개요,

〔표 3〕 가나가와현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항목	내용
개인정보 취급사무의 등록	실시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사무의 명칭, 개요, 개인정보취급사무를 소관하는 조직의 명칭, 개인정보취급사무를 개시하는 연월일, 개인정보기록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개인유형 등을 사전에 개인정보 사무등록부에 등록해야한다.
취급제한, 수집제한,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온라인 결함에 의한 제공 금지	실시기관은 사상·신조 및 종교, 인종 및 민족, 범죄력,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신분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취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해당 취급목적의 달성을 위해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온라인 결함에 의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및 불복신청	정보주체는 자기정보의 공개청구권, 정정청구권, 이용정지청구권 등이 있으며, 실시기관은 공개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로 공개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준부에 관한 정보, 비용청구 등이 있다 행정문서 기타 복사 등의 교부에 대해 청구자는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나가와 현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 자문하고, 심사회의 의견을 거쳐, 해당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재결을 수행하여야 한다.

등록업무에 대한 문의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지사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의심이 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해당 사업자에게 취급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가나가와 현의 벌칙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가나가와현의 벌칙 내용

내용	벌칙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가 기록된 행정문서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도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서 전적으로 그 직무용 이외의 용건으로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 도면, 전자적 기록을 수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2.4.2 미야기현(宮城縣)의 개인정보보호조례

미야기현은 1997년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03) 및 시행(2005)에 따라 최종 개정 2010년 미야기현 조례 제 66호 개인정보보호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행정정보공개실에서 정보공개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상황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구성은 전 7장, 71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실시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공개, 정정 및 이용정지, 제4장 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제5장 개인정보보호 심사회,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등이다.

미야기현은 가나가와현과 같이 조례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의 권리 명시 및 적정한 취급을 확보를 통한 개인의 권리 이익의 침해 방지에 두고 있다. 개인정보의 정의도 가나가와 현과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기타 특정개인 식별되고 또한 식별될 수 있는 것이고 규정하였고, 실시기관의 범위도 가나가와현과 유사하다. 다만, 의회가 제외되어 있다²⁾.

실시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취급에 대하여 취급사무의 등록, 개인정보 취급제한,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 불복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정보주체

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명시규정에서 공개청구권, 정정청구권, 이용정지 청구권 등 뿐만 아니라 실시기관의 재량적 공개도 규정하고 있다. 재량적 공개란, 실시기관이 공개청구에 관한 개인정보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청구자에 대하여 해당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은 해당 공개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15일 이내에 공개청구에 관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지 비공개할 지에 관한 내용의 결정,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유의 결정,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회에 자문하고, 심사회의 의견을 거쳐, 해당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해서는 미야기현의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 규정은 가나가와현과 유사하며, 그 내용으로는 지침의 작성,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 시정권고, 공표, 고충상담 처리 등이 있다. 지사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심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침을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실시기관은 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취급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실시기관의 설명자료 요구에 대해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시정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충상담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사 또는 실시기관의 자문에 따라 미야기현 개인정보보호심사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심사회는 실시기관의 직원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의견 또는 설명을 듣고, 필요한 자료제출 및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있다. 벌칙으로는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5] 미야기현의 벌칙 내용

내용	벌칙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및 위탁에 종사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 정보가 기록된 행정문서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도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서 전적으로 그 직무용 이외의 용건으로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 도면, 전자적 기록을 수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공개 결정에 기초하여 개인정보의 공개를 받은 자	5만엔 이하의 과료

2.4.3 오사카부(大阪市)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오사카부는 1996년 10월에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시행하였으며, 가장 최근 개정 2009년 3월에 오사카부 개인정보보호조례를 개정하였다. 오사카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홍보실내 부민정보과에서 정보공개제도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다. 조례는 전문, 제5장, 6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실시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은 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은 잡칙, 제5장은 벌칙 등이다. 오사카부는 개인정보보호조례의 전문에서 프라이버시의 최대한의 보장과 더불어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조하였다²⁾.

오사카부의 조례목적은 앞선 2개 현의 목적과 유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권리 및 취급의 적정성 확보를 명시하였다. 기타 개인정보, 행정문서 및 실시기관의 범위도 유사하다. 실시기관에는 수도기업관계자가 추가되어 있다.

오사카부는 실시기관의 개인정보보호로서 취급사무의 등록 및 종람, 비공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불복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하고, 공개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의 경우는 공개청구를 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로서 일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 규정에 의한 명시적 금지

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해당한다. 또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개인의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보,
- ② 부의 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연구, 기획, 조정 등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동종의 조사연구, 기획, 조정 등을 공정하고 적절한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③ 셋째, 감독, 출입검사, 허가, 인가, 시험, 입찰, 교섭, 섭외, 채용 등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목적달성이 어렵고, 사무의 공정 및 적정한 집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경우
- ④ 개인의 지도, 진단, 판정, 평가 등의 사무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목적달성이 어렵고, 사무의 공정 및 적정한 집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⑤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 범죄 예방 및 수사 기타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개인정보
- ⑥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어도 공개함으로써 본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이 있다. 이에 더하여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공안위원회 또는 경찰본부장이 인정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정보

오사카부의 벌칙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오사카부의 벌칙 내용

내용	벌칙
전자계산기 처리와 관련되는 개인정보 파일등의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도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직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개인의 비밀 사항이 기록된 문서 등을 수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공개 결정에 기초하여 개인정보의 공개를 받은 자	5만엔 이하의 과태료

[표 7] 일본의 3개 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조례의 비교

단체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오사카부
재개정 년도	- 1990.3 제정 - 8차례 개정	- 1997년 정정 - 2010년 최종 개정	- 1996년 10월 제정 - 2009년 3월 개정
구성	- 총5장 68조, 부칙	- 총7장, 71조, 부칙	- 총5장, 64조, 부칙
개인정보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고 또한 식별 될 수 있는 것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기타 특정 개 인이 식별되고 또한 식별될 수 있는 것이고 규정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 정 개인이 식별되고 또한 식별될 수 있는 것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	지사, 의회, 공영기업관리자, 교육 위원회, 병원사업관리자, 선거관 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노동위원회, 수용위원회, 해구어 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관리 위원회	지사, 공영기업관리자, 교육위원회, 병 원사업관리자,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위원회, 감사위원, 노동위원회, 수용위 원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 어장관리위원회	지사, 의회, 공영기업관리자, 교육위 원회, 병원사업관리자, 선거관리위 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노동위 원회, 수용위원회, 수도사업관계자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및 내수면어장 관리위원회,
실시 기관이 취급하는 개인 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취급 사무의 사전등록 -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제한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 불복신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 취급사무의 등록 - 개인정보 취급제한 -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 - 불복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	- 취급사무의 등록 및 종람 - 비공개 개인정보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 불복신청 등을 규정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5만엔 이하의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 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 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 하의 벌금 - 5만엔 이하의 과태료

이상에서의 3개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Ⅲ.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3.1 중국 개인정보 보호의 발생 배경

중국은 전통적으로 고도의 집중된 계획경제체제가 집단과 공유를 강조하여 왔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법률문화 배경 하에서 사회도덕의 측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국가의 이익과 단체의 이익이며, 개인 권익의 무조건적 단체 이익에 대한 복종이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비판 대상이 되었었다.

등소평이 창도한 개혁개방정책의 추동 하에 정부의 사회에 대한 관제가 완화되어 시장경제가 신속히 발전되게 되었고 시민이 경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자유의 범위가 갈수록 커졌으며 민간인의 부의 축적도 신속

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개인정보의 상업가치가 뚜렷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조직 및 개인이 개인정보를 획득·수집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전파하는 능력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범위가 갈수록 엄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에서의 공민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갈수록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개인정보에 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민간의 욕구는 중국에서의 입법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대하여 갈수록 많은 긍정과 보호를 하게 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말한다면,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도는 총체적으로는 여전히 초보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체가 최근에 와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가 서구국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탐색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11].

3.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

2003년 국무원 정보사무실의 위탁으로 법학연구소 전문가들이 기초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건의안이 나온 뒤 2005년 그 초안이 완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핸드폰번호, 집 주소, 개인의 진료기록이나 직업 등이 포괄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개인의 비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모두 법적 보호 대상에 속한다. 이 외 공공장소에 몰래 카메라를 임의로 설치해 녹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초안은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출범한 후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게 되면 행정, 민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추궁 받게 된다고 밝혔다^[12].

(표 8)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경위

연도	추진내용
2003	국무원 정보사무실의 위탁으로 법학연구소 전문가들이 기초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건의안 제출
2005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완성
2008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국무원 제출
2010.2	개인정보 불법 획득 처벌 조항을 새로 추가한 ‘형법 수정안(7)’ 시행
2010.7	저장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저장성 정보화 촉진 조례(초안)’ 심의.
2011.9	중국 정부가 ‘컴퓨터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해석’을 발표 9월 시행

2008년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국무원에 제출됐다. 2010년 2월 28일, 개인정보 불법 획득 처벌 조항을 새로 추가한 ‘형법 수정안(7)’ 시행되었는데 형법 수정안 제253조에 추가된 1조항은 ‘국가기관 또는 금융·통신·교통·교육·의료 등 단위(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단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공민 개인정보를 국가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구금,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절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 획득할 경우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고 명시하였다^[13].

저장성 인민대표대회는 7월 26일 ‘저장성 정보화 촉

진 조례(초안)’를 심의했다. 이 ‘조례’는 금융, 보험, 통신, 수도, 전기, 가스, 병원, 부동산 중개, 건물관리 분야 기관·기업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정보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민법 통칙’, ‘침권 책임법’ 등 법률과 행정 법규 규정에 근거해 민사 책임을 추궁하거나 ‘형법’ 상관 규정에 근거해 형사 책임을 물기로 했다^[14].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7)’,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인터넷 전자우편 서비스 관리 방법’ 등의 일부 법률·법규 가운데 개별 조항에서만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9월 중국 정부가 ‘컴퓨터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해석’을 발표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은 사이버범죄의 ‘심각한 경우’, ‘아주 심각한 경우’의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신분인증정보 탈취 범죄의 경우 500개 이상을 탈취한 경우 ‘심각한 경우’로 규정, 2,500개 정도를 탈취하면 ‘아주 심각한 경우’로 분류했다. 불법탈취금액이 5,000위안(100만원) 이상 또는 경제적 손실이 1만 위안(2,000만원)인 경우는 심각한 경우로 분류했다^[15].

불법 획득한 정보 및 컴퓨터 제어 권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전이, 구입, 판매 또는 은닉할 경우 모두 형사 처벌된다. 법인 명의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경우 관리자 및 담당자는 형사적 처벌대상이다.

법률 용어인 “국가사무,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영역의 컴퓨터시스템”, ‘해킹, 컴퓨터 불법제어에 사용한 전문프로그램 및 도구’ 등 구체적인 범주 및 판단기관 등도 규정됐다.

기존 ‘97년 제정된 중국형법 제 285-286조에는 국가, 사무, 국방건설 및 첨단과학기술영역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컴퓨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이버범죄의 처벌대상이었다.

이를 개선해 지난해 2월 타인컴퓨터에 불법 침입, 악성프로그램 도구를 제작,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기준 및 미흡했던 부분이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의의를 갖는다^[15].

3.3 개인정보 또는 개인은사(個人隱私)의 범위

3.3.1 은사(隱私) 및 은사권(隱私權)의 정의

중국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법분야에서는 개인은사(個人隱私)라는 단어가 있다.

은사는 사인생활비밀 또는 사생활비밀이라고 하는데 사인생활의 안녕이 타인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사인정보비밀이 타인의 위법적인 수집·탐지와 공개 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인의 생활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공공이익과 관계되는 생활, ② 공공이익과 관계없는 생활, 즉 사생활이라고 통칭한다. 사생활은 사생활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3.3.2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에 등장한 개인정보

중국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변화조짐이 있다. 전국인민대회에 보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초안'이 바로 그 단초가 되고 있다. 이 법안 제 9조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의 성명, 주소, 출생일, 신분증번호, 의료기록, 인사기록, 사진 등 독자적으로 또는 기타 정보와 함께 특정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3.3.3 은사권

은사권을 사생활 비밀권이라고도 하는데 공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밀과개인생활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인의 간섭을 금지하는 일종의 인격권이다.

은사권이란 공민과 법인이 그 개인의 비밀 또는 기업의 비밀에 대하여 가지는 불가침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은사권을 또 개인비밀권이라고도 한다. 은사권은 공민이 가지는 사인생활안녕과 사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타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수집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일종의 인격권이다¹⁶⁾.

은사권은 공민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유에 속하는 부분을 비밀로 하는 것이 기도하며 본인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권리이다.

3.4 중국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중국의 은사권은 '명예권' 기소에서 유래하여, 최고 인민법원에서 사법해석을 공포하고 법원이 은사권의 안전을 수리할 수 있는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현재 은사권에서 인민법전초안을 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발전적 인식 과정을 거치고 있다. 비록 중국의 현행 입법 중에는 은사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입법 정신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다.

헌법조항에서 은사권 보호의 정신을 구현하였다. 헌법 제38조에서는 은사권을 인격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제39조 규정은 불법적인 수사 혹은 불법적인 공민 주거 침입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의 은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헌법조문이다. 제40조 규정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여 이 조문 역시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조문이다.

중국의 형법 역시 은사권 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제245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혹은 타인의 주거에 대한 불법적 침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252조는 통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통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감청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규정 제1항도 통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총칙(民法通則)'에는 은사권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다. 하지만, '민법총칙' 반포 시행 후, 중국은 사법적 해석의 공포를 통해 은사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3대 소송법은 모두 은사권 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은사 사건에 대한 불공개 심리제도의 수립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이 없다. 하지만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회에 보고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이 그것이며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3.5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상세

3.5.1 입법취지와 법의 적용범위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은 전체 7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정부기관 또는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행위를 규범하고 개인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문 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동일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¹¹¹⁾. 이 점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제9조는 정부 정보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기타 개인정보처리업 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이 중 전자는 “행정기관이나 법률 또는 법규에서 위임한 행정 관리기능을 행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고 하고, 후자는 “정부기관 외에 본법에 규 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취급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 는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만, 이런 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 되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즉, 이 법안 제10조는 첫째, 이 법은 국가안전기 관이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인정보처 리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이 법은 공 민이 순수한 개인주의 또는 가정활동에서 행하는 개인 정보처리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법인이나 기타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수량이 보다 적 고 처리활동이 개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5.2 적용법원칙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은 다음과 같 은 법의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적법원칙(제2조) : 정부기관 또는 기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행위는 반드시 이 법안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예외로 다른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권리보호원칙(제3조) : 정보주체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이익형평원칙(제4조) : 이 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국가이익이나 사회공공이익을 손해하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정보질량원칙(제5조) : “정부기관이나 기타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가 다만 수집목적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정확성이나 동일성 또는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⑤ 정보안전원칙(제6조) : 정부기관이나 기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손실·훼손이나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 등에게 요구하고 있다.
- ⑥ 직업의무원칙(제7조) : 정부기관이나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은 그의 임직기간동안 개인정보처리를 통하여 획득한 내용에 대하여 직업비밀업수의 직업의무를 지니며 함부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기타 방식으로 누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⑦ 구제원칙(제8조) : 정보주체가 정부기관이나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행위가 본법에 위반되며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구제 또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5.3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처리

3.5.3.1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이 법률 제11조는 정부기관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그의 직권범위 내에서 그의 직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정부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하고 적법하고 특정된 사용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사회적 부담

을 될수록 경감하고 개인정보를 중복하여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목적과 무관한 정보들을 제때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① 개인정보문건의 명칭 ②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③ 수집기관의 명칭 ④ 개인정보의 주요내용 ⑤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⑥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⑦ 개인정보문건의 주요 사용자 ⑧ 개인정보문건의 공개방식과 장소 ⑨ 기타 사항을 각급 인민정부 정보자원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정보자원주관기관에서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내에 정부 공보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등록정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제 13조를 보면 정부기관에서 이 법률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명확한 사용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용목적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특정 용도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①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정보주체한테 제공한 정보 ② 정부기관의 법적 직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③ 국가안전이나 기타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경우 ④ 국제법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나 국제조직에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필요한 경우 ⑥ 타인의 중대한 권익침해방지에 필요한 경우 ⑦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식으로 학술연구나 통계에 사용하는 경우 ⑧ 정당한 이유로 정부기관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⑨ 법률이나 법규에서 정한 기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이처럼 특정목적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사용방법·재교환조건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제한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접수한 제3자는 반드시 이러한 제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5.3.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획득의 권리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

적으로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에게 해당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이 주제에 대해 동 법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는 정보기관에게 그가 보유한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개인정보공개를 신청함에 있어서 일정한 신청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① 신청인의 성명·신분증번호·주소 ② 신청인의 연락방식 ③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에 대한 기술 ④ 신청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정부기관의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팩스·전자메일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업무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는 즉시 등기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등기우편·팩스·전자메일의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기관에서는 접수당일에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제19조 이외에 제20조에서는 다시 “정부기관에서 현저한 공공이익수요에 근거하여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가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하지 않으며 또는 공개가 개인권리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더 큰 공익에 기초하여 통상적인 공개기준과는 다른 별개의 공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또 동법 제21조는 “신청된 개인정보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정부기관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형상 하나의 정보가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때 양자를 분리하여 공개가능한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는 소위 “부분공개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동법 제22조에서는 “비공개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해 주는 경우 당해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에서는 당해 개인정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확인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통상 먼저 정보의 존재여부를 확

인하고, 그 다음으로 그 정보가 공개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일정한 정보의 경우에는 소위 정보의 존재여부 자체가 이미 정보의 공개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의 존재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제24조는 정보주체에 의하여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정식결정」이라고 한다. 만일 이 기간 이내에 정식결정을 하지 않으면 비공개결정으로 간주된다.

정부기관에서 정식으로 개인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시간·장소·형식·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도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에는 거부이유·법률근거·구체경로와 방식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식결정 이외에 「서면고지결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면고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① 신청된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정부기관에서 이미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신청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당해 정보가 기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여 기타 정부기관에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 ④ 신청된 개인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의미가 되어서 정보의 존재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여부에 대한 내용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좀 더 신속하게 결정통지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제27조에서 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검색비·복사비·우편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징수하는 비용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청이 투입한 원가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부과기준금액은 성급이상 가격이나 재정주관기관에서 동일적으로 정한다. 신청인은 관련 비용을 먼저 지불하여야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부기관의 책임자의 비

준을 거쳐 이와 같은 정보공개비용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정보공개법과 달리 중국은 오로지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비용부담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입법된다면 적어도 정부주체의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조례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법률은 행정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점이 존재한다. 첫째, 정보공개법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을 공개요청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개조례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기관 이외의 기타 개인정보관리자에게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 절차 등은 공통점이 많으므로 입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²⁾.

3.5.3.3 개인정보의 시정과 사용정지청구권

개인정보보호법안 28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한 결과 행정기관 등의 개인정보기록에 착오가 있거나 부정확한 점을 발견할 경우 정부기관에게 시정하거나 사용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안 제29조에 의해 정부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그 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개인정보를 시정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의무가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시정이나 사용정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지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된 사항이 특별히 복잡하여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관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결정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안 제32조에 의거하여 정부기관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연장기한과 연장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시정 또는 사용정지의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개인정보의 비시정 또는 비사용정지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서에는 반드시 거부이유와 법률근거 및 구체방식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

3.5.4.1 정부관리제도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문제도 함께 규율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먼저, 동법안 제35조는 정부기관이 아닌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 정보자원주관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아닌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록제도를 통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시 개인정보처리를 “주요” 취급하거나 “개인정보처리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는” 공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을 개시하기 전에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에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정부통제를 가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할 수 있다. 등록대상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실시하고, 허가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은 형식적인 심사 이외에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에서는 등록 또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등록에 동의하는지 여부 또는 허가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에서 등록에 동의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3.5.4.2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정부기관이 아닌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① 동의한 경우 ② 정보주체와 계약관계 또는 유사한 관계가 존재하며 계약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중요한 이익의 보호에 이로운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가 제3자의 합법권익의 보호에 이로운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가 공공이익의 보호에 이로운 경우 ⑥ 법률이나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사용 목적을 초월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기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원래의 정보사용 목적을 초월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법률이나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 경우
- ②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보호에 극히 필요하며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③ 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직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극히 필요하며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이행에 방해되는 경우

3.5.4.3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가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기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정보주체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생활이나 재산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② 제3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③ 정보주체가 유사한 개인정보문건을 중복하여 공개 청구하고 기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상적인 개인정보처리활동에 현저히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법률이나 법규에서 정한 기타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획득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기록의 내용에 착오 또는 부정확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기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확인후 정보주체의 청구가 성립될 경우 신속히 관련 개인정보를 시정하거나 사용정지하여야 한다¹¹¹.

3.5.4.4 업계자율시스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한편으로는 등록제도나 허가제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타의 개인정보처리자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업계자율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여 점차적으로 업계자율기관에 정부 기능을 전환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업계자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업계자율기관의 설립 조건이나 요구에 관하여 국무원정보자원주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자율기관이 설립된 후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업계자율기관이 행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① 동 업계의 행위준칙을 정한다.
- ② 동 업계의 직업신용도인증마크를 보급한다.
- ③ 동 업계와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의 관계를 조화한다.
- ④ 정보주체의 신고를 접수하며 정보주체와 구성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 ⑤ 업계자율기관구성원들의 관계를 처리한다.
- ⑥ 업계자율기관의 章程(약관)에서 정한 기타 직능
- ⑦ 정부정보자원주관기관에서 위임한 기타 직능

IV. 결 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기본법과 일반법의 이층구조의 특이한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전문가의견안)이 2009년 전국인민대회에 보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자로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현황 및 법안 내용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훨씬 그 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수정 및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과기”도 요구할 수 있다^[11].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모두 한편으로는 민간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도 법률로 규율을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사후삭제의 원칙(opt-out)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보유 개인데이터의 3가지로 구분하고 그 종류에 따라 법적 보호 의무를 달리하고 있다^[9].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는 [표 9]와 같다.

[표 9] 한국, 일본,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

국가	보호대상 개인정보	정보처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한국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민간부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된 개인정보 이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킴	- 목적에 필요한 최소 수집 원칙 - 목적제한의 원칙 -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원칙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원칙 - 처리방침 공개 및 열람청구권 보장 원칙 - 사생활 침해 최소의 원칙 - 익명처리 원칙 - 정보주체의 신뢰 원칙	- 개인정보를 제공 수여권 - 동의 및 범위 등의 선택권 - 열람요구권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과기를 요구권 - 개인정보 규제권
일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일 이 가능한 것	-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원칙 - 적정한 취득의 원칙 - 정확성 확보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투명성 확보의 원칙	- 통지 또는 공표권 - 공개요청권 - 정정요청권 - 이용정지권
중국	개인의 성명·주소·출생일·신분증번호·의료기록·인사기록·사진 등 독자적으로 또는 기타 정보와 함께 특정된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적법 원칙 - 권리보호 원칙 - 이익형평 원칙 - 정보질량 원칙 - 정보안전 원칙 - 직업의무 원칙 - 구제 원칙	- 공개 요구권 - 개인정보 시정권 - 사용정지 청구권

향후 국내에서도 현재 발효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과 법안을 준비 중인 중국의 법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안을 보완하여 좀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황상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제』 541, pp. 64-81, 2003. 1.
- [2] 이자성,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韓國地方自治研究』 第9卷 第3號(통권 20호), pp. 123-144, 2007. 11.
- [3] <http://www.caa.go.jp/seikatsu/kojin/>.
- [4] 이홍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의 사회변화”, 2011.
- [5] 이자성,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고찰 :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중심으로”, pp. 767-782. 2007.
- [6] <http://www.soumu.go.jp/>.
- [7] 이자성,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및 구성 내용에 관한 고찰”, 『전자정부법제연구』, 2(1), pp. 111-136, 2007.
- [8] 總務省, 『平成17年度における行政機關個人情報保護法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法律』, 2006.
- [9] 김경환, 이상우,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KiRi Weekly』, 2010. 11. 8.
- [10] 고선규, “일본지방 자치단체의 정보보호 추진방향”, 『지역정보화지』 Vol. 34, pp. 72-73, 2005. 9.
- [11] 정하명, 김창조, 이동식, 권세훈, 초금명, 임중호, 『중국 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법제처, 2010. 10.
- [12] 온바오, “中, ‘개인정보 보호법’ 곧 출범”, 2005. 9. 9.
- [13] 온기홍, “중국, 개인정보 줄줄 샌다!”, 『보안뉴스』, 2010. 8. 16.
- [1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chinapop.gov.cn>.
- [15] 장윤정, “중국,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컴퓨터 정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해석 발표’”, 『보안닷컴』, 2011. 9. 14.
- [16] 황근, “은사권의 법률보호에 관하여”, 『광서청년간부학원학보』 제20권 제3기, 2010. 6.

〈著者紹介〉



전 은 정 (Eun-Jung JUN)
학생회원

2006년 8월: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석사(공학석사)
2010년 3월~현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개인정보보호



김 학 범 (Hak-Beom KIM)
정회원

1990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졸업(공학석사)
2001년 2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91년 10월~1996년 6월: 한국전산원 주임연구원
1996년 7월~2001년 8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술표준팀장
2001년 9월~2003년 1월: (주)드림시큐리티 상무이사
2003년 2월~2005년 3월: (주)장미디어인터랙티브 상무이사
2008년 4월~2009년 6월: 인포섹(주) 수석컨설턴트
2009년 7월~2010년 12월: 에스지에이(주) 연구소장
2001년 3월~2009년 2월: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겸임교수
2005년 9월~현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11년 7월~현재: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2011년 9월~현재: (주)지엔에스인증원 ISMS본부장
<관심분야> ISO 27001, K-ISMS, PIMS,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개인정보보호



염 흥 열 (Heung-Youl YOUM)
정회원

1981년 2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
1983년 9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1990년 2월: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졸업
1982년 12월~1990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1990년 9월~현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정교수
1997년 3월~2000년 3월: 순천향대학교 산학연컨소시엄센터 소장
1997년 3월~현재: 한국정보보호학회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논문지편집위원 위원장, 수석부회장(역), 학회장(역)
2005년~2008년: ITU-T SG17 Q9 Rapporteur(역)
2006년 11월~2009년 2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보호전문위원
2009년 5월~현재: 국정원 암호검증위원회 위원
2009년~현재: ITU-T SG17 부의장/SG17 WP2 의장
<관심분야> 인터넷보안, USN 보안, IPTV 보안, 홈네트워크 보안, 암호 프로토콜